

목포시보육시설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112
----------	-----

1. 제정이유

- 영·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,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
- 영·유아 보육법에 의한 목포시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통일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함.

2. 주요내용

- 공립보육시설의 업무(입소 영·유아에 대한 보육 등) - 안 제4조
- 보육대상(0세 ~ 5세 이하, 기타 보육위원회 의결시 12세 이하 아동)
- 안 제 5조
- 입소순위(입소 선순위) - 안 제6조
- 보육시간·보육료 등 - 안 제7조 ~ 제8조
- 보육위원회(구성, 기능, 임기, 회의 등) - 안 제9조 ~ 제17조
- 위탁운영(위탁대상자, 기간, 보조금 보조 등) - 안 제18조 ~ 제20조
- 종사자 관리(종사자의 구분, 임면, 직무 등) - 안 제21조 ~ 제35조
- 종사자의 징계(징계 사유, 효력, 절차 등) - 안 제36조 ~ 제40조
- 종사자의 신분보장(신분보장, 직권면직, 정년 등) - 안 제41조 ~ 제46조
- 예산회계(회계처리 등) - 안 제47조 ~ 48조
- 보고와 지도감독 - 안 제49조

3. 기타사항

- 제정준칙여부 : 영·유아 보육법에 근거
※ 조례제정에 대한 상급기관 준칙 없음
- 타·시군 제정사항
- 도 내 : 광양시, 여수시
-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수원시, 고양시 등
- 예산지원사항 : 없음. 단, 목포시의 재산 무상임대계약(토지 또는 건물)

4. 검토의견

- 지금까지 「보육시설운영조례」가 제정되기 전에는 영·유아보육법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, 이는 포괄적인 운영의

규정인 바

- 현재 운영근거인 영·유아보육법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여도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보육시설의 확대·축소,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내부 규정인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